

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555
----------	------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연 35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를 규정 하였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2005. 1. 27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중
“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”를 삭제
- 성남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

□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정례회 기간(35일 이내) 및 임시회 기간(1회 15일 이내)이 폐지된 사항으로
- 연간 회의일수 80일은 현행대로 제한을 두고 있어 회의기간의 부족한 문제의 완전해소는 어려우나 의사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는 다소 완화되었음
-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“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은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,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
- 본 안건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